

## 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91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7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580)

#### 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더조은환경기술㈜(정민섭)②(주)서영엔지니어링(김종훈)  
③(주)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(박재호, 김수찬)

나. 전화번호 : ①031-251-7904②02-6915-7000③ 02-738-1130

2. 명칭 :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·제거하는 기술 (슬레이트 공법)

#### 3. 내용요약

<분야>

건축 > 해체 > 기계식 해체

<기술의 내용>

신청기술은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로 작업면과 평행한 상태를 만든 후, 작업대에 장착된 흡윤장치로 지붕재를 흡윤상태로 만들며, 해체한 지붕재를 적재대에 임시 적재 및 보관하고,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하고,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에 의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여 제어와 사람이 탑승하여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공법이다.

<범위>

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, 물을 분사하는 흡윤장치, 작업 해체물을 적재하는 적재대,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여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8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